

〈자료〉

개정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 도시계획시설기준
- 건축법
- 건축사법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개정 3. 20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4 호를 삭제한다.

영 제 3 조제 3 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복리시설) 영 제 4 조제 6 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공동시청 안테나
2. 공동저탄장 시설
3. 노인복지 시설

제 4 조 제 2 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 5 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 1 항·제 2 항·제 4 항 및 제 6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5 항을 삭제한다.

① 영 제 9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경우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평가조서. 다만,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고용하고 있는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취득자를 말한다)의 자격증 사본 및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 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건설부장관이 그 시기를 결정하여 실시하되, 지역사정이나 주택건설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로서 하여금 달리 등록시기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 9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다.

⑥ 영 제 9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개인인 때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사업자 명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제 7 항중 “취소”를“말소”로 하고, 동조 제 8 항중 “영 제 9 조 제 6 항”을 “영 제 9 조의 2 제 3 항”으로 한다.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 조 (사업실적 및 계획서의 제출) ① 등록업자가 영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당해 연도 사업실적은 별지 제 10 호서식에 의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은 별지 제 10 호의 2 서식에 의한다.

② 도지사가 영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등록업자의 사업실적은 별지 제 10 호의 3 서식에 의하고, 사업계획은 별지 제 10 호의 4 서식에 의한다.

제 10 조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건설사업실적 또는 주택건설공사도급 실적은 증명하는 서류(주택건설사업실적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과 준공검사필증사본을, 주택건설도급실적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4.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격면허증사본, 전기분야·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사본,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사본을 말한다)

제 10 조 제 4 항중 “매년 10월말까지”를“매년 12월말까지”로 하고, 동조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11 조를 삭제한다.

제 1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국민주택기금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① 한국주택은행장이 영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 제1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주택자금의 분기별 조달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① 영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산정하되, 국민주택기금의 매월의 자산(국민주택기금의 관리계정·대조계정 및 이연계정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1만 2천분의 22를 곱한 금액을 1월동안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한다.

② 제 1항의 위탁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당해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을 지급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의 범위 안에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 영 제30조제 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 제3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 3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 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공공시설용 대지의 확보) 3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동사무소·파출소 및 우체국을 설치하기 위한 대지를 각각 1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우체국의 설치를 위한 대지는 7천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때까지는 그 확보를 유보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사업주체가 법 제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의 2 서식에 의한다.

③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32조 제 2항제 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의 도서를 말한다.

⑤ 영 제32조 제 2항 제 7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건축대지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토지사용승락서(사업주체가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사업주체가 영 제3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 5항 각호의 서류이외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면(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지적도(도시계획시설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도면)

3.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도서

⑦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변경 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 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 보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 4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의 2 서식에 의한다. (

③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32조제 4항제 2호의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다.

⑤ 영 제32조제 4항제 2호 단서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의 도서중 대지조성공사 위치도·지형도·평면도 및 부대시설의 설계도를 말한다.

⑥ 영 제32조제 4항제 4호의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공급시기·방법 및 조건

⑦ 영 제32조제 4 항제 5 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를 말한다.

⑧ 제19조제 6 항 및 제 7 항의 규정은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 3 (사업계획승인의견서) 영 제32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시장과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 ① 법 제33조 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 1 항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의 2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의 공고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주체의 변경. 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파산하거나 합병·사업자등록말소·영업정지 기타 당해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비의 증액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 변경

제21조 제 1 항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조정(영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 영 제35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내역

2.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명세

3.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제24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 2 (국민주택의 전매신청등) ① 법 제38조의 3 제 1 항에서 “최초로 공급한 날”이라 함은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의 3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또는 전대에 대한 국민주택사업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의 4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전매·전대동의신청서에 영 제37조 제 2 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 2 항제 3 호에서 “장기간”이라 함은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④ 영 제37조제 2 항제 4 호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민주택의 전매 또는 전대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을 우선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매입시기와 금액을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 2 항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① 법 제4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2호의 2 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서를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0호의 2 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군수는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 3 서식에 의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 4 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주택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 5 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가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2호의 6 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 7 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 를 삭제한다.

제33조의 2 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5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립식 주택부재성능인정의 표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3 (조립식공법에 의한 주택건설) 법 제45조의 4 제 2 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자”라 함은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1 인과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 기술자(기술계 자격종목중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를 말한다) 1 인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 2 호서식], [별지 제 6 호서식] 내지 [별지 제 10 호의 2 서식], [별지 제 21 호서식] 내지 [별지 제 23 호서식], [별지 제 33 호서식], [별지 제 34 호서식], [별지 제 36 호서식] 내지 [별지 제 41 호서식], [별지 제 42 호의 2 서식] 내지 [별지 제 42 호의 4 서식] 및 [별지 제 46 호서식]을 각

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 27 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0호의 3 서식], [별지 제 33호의 4 서식], [별지 제42호의 5 서식] 내지 [별지 제42 호의 7 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3·31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설에는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이 포함된다.

제 6 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과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단일구조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 및 운동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설치가 토지 이용상 합리적이어야 한다.

제 19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자동차정류장법 제 3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화물적하용자동차운송사업 중 콘테이너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용 자동차정류장을 말한다.

제 19 조 제 2 항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물자동차정류장 : 화물의 적하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정류장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트럭정류장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동차 정류장을 말한다.

제 20 조 제 1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여객자동차정류장의 소음권에는 평운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여객 자동차정류장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는 노선의 시·종점에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 결정할 수 있다.

제 20 조 제 2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송 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도시의 토지이용 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된 간선도로나 고속국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주택자재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82년12월31일까지 별표 6의 개정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압축강도시험기 및 시험실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한다.

(별표·별지생략)

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에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자동차정류장의 설치기준) 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정류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식당·다방·매점·약국·이미용실·휴게실
2. 간이주유시설·변전실·보일러실·공해방지시설
3. 차고·세차장·종업원용 휴게실·목욕실·기숙사

제21조의 2 내지 제21조의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 2 (자동차검사시설) 이 규칙에서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을 말한다.

제 21 조의 3 (자동차검사시설의 결정기준) 자동차검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검차량의 접근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2. 수검차량의 출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상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계획상 부득이 하고,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에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의 4 (자동차검사시설의 설치기준) ① 자동차검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6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자동차검사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매점·식당
2. 휴게실·다방
3. 종업원용 기숙사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7 조 (항만) 이 규칙에서 “항만”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 2 조제 2 항의 항만시설 중 다음의 것.
 - 가. 외곽시설
 - 나. 계류시설 중 안벽·물양장·돌제물양장·선양장
- 다. 임항교통시설 중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 라. 여객시설
- 마. 보관시설
- 바. 선박보급시설

2. 어항법 제 2 조제 2 항의 어항시설 중 다음의 것.

- 가. 외곽시설
- 나. 계류시설 중 안벽·물양장·선착장·선양장
- 다. 수송시설
- 라. 보급시설

제47조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원지의 소음권에는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업지역·준주거지역·자연녹지 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원지 안에서 유원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전선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3. 도로·철로·케도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치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와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방화용저수조
6. 통신시설·축성시설
7.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가설공작물

제57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사무소·주차장
2. 식당·약국·다방 등 시장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0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통업무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2. 간이주유시설
3. 휴게실·식당·약국·다방 등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종업원용 기숙사

제5장에 제91조의 2 내지 제91조의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 2 (문화시설) 이 규칙에서 “문화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문화관
2. 극장·음악당
3. 박물관
4. 미술관
5. 기념관
6. 전시관

제91조의 3 (문화시설에 대한 결정기준) 문화시설에 대

한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접근이 쉽고 주거생활의 평온에 장애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2. 주요시설물의 인근지역이나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거전용지역·전용공업지역·생산녹지 지역 이외의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은 주거전용지역에 결정할 수 있다.

제91조의 4 (문화시설의 설치기준) ① 문화시설은 문화의 창조 발전과 시민의 문화의식의 고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 문화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2. 식당·다방·매점·약국·휴게실

제95조 (저수지) 이 규칙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수도용수·공업용수 또는 농업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 또는 제방, 기타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율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 (저수지에 대한 결정 및 설치기준) 저수지에 대한 결정과 그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62조와 하천법 및 특정다목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하수도) 이 규칙에서 “하수도”라 함은 하수도법 제 2 조제 2 호 및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및 종말처리장을 말한다.

제1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이 규칙에서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오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서 오물청소법 제 2 조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종말처리시설 및 쓰레기종말처리시설과 환경보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산업폐기물 종말처리장을 제외하며, 이하 “산업폐기물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27조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구밀집지역 및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근접하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분뇨종말처리시설 및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은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산업폐기물 시설은 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 각각 결정하여야 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의 설치기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오물청소법 제 9 조 및 환경보전법 제52조의 2 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建築法中改正法律 (4.3 일)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3號를 削除하고, 同條第4號중 “國旗揭揚臺,” 다음에 “共同視聽안테나,”를 插入하며, 同條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15號 目次中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하며, 同條第18號를 削除한다.

7. “主要構造部”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間壁·셋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遮陽·屋外階段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 建築物의 構造上 重要하지 아니한 部分은 제외한다.

第3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第3章 내지 第5章(第28條 및 第41條를 제외한다)의 規定은 都市計劃區域 이외의 區域(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區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제외한다)에서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條의 題目 “(職權의 委任)”을 “(權限의 委任)”으로 하고, 同條 第1項 및 第2項중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한다.

第5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4項을 第5항으로 하며, 同條 第2項 및 第3項중 “第1項”을 각각 “第1項 또는 第2項”으로 하여 이를 第3項 및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 都市計劃區域·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區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 있어서의 建築物과 기타 區域안에 있어서의 延面積 200 平方미터 이상이거나 3層이상인 建築物을 建築(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當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 平方미터 이상이 되거나 3層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市長 또는 郡守는 建築士法 第23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建築士의 調査 및 檢査를 받아 許可를 申請한 것에 대하여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調査 및 檢査 調書에 의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함으로써 許可에 갈음한다.

- 1. 바닥面積의 合計가 30 平方미터 이내의 增築·改築·再築 또는 大修繕
- 2. 이미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로서 바닥面積의 合計가 30 平方미터 이내 또는 延面積의 10분의 1 이내의 바닥面積의 增減을 위한 設計變更이나 大修繕에 해당하는 設計變更

⑥ 建築物을 建築 또는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등을 한 것으로 본다.

- 1. 第47條第2項에 의한 工事用假設建築物의 築造申告.
- 2. 道路法 第40條에 의한 道路의 點用許可
- 3. 下水道法 第24條에 의한 排水施設의 設置申告
- 4. 汚物清掃法 第15條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및 同法 第16條에 의한 糞尿淨化槽의 設置申告

第6條 第1項 中 “第4條의 規定”을 削除하고, 同條 第2項 中 “建築士法 第4條의”를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할”으로, “해당”을 “建築士法에 의한”으로 하고, 同條 第7項 中 “第1項”을 “第2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8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⑧ 建築主가 當해 工事監理者 또는 工事施工者를 變更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7條의 題目 “(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용승인)”을 “(竣工檢査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 中 “第5條第1項”을 “第5條第1項 또는 第2項”으로 하며, 同條第4項을 第5項으로, 第3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 및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2項의 경우에 市長 또는 郡守는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가 同法 第23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에 관한 調査 및 檢査를 행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調査 및 檢査 調書에 의하여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할 수 있다.

⑥ 建築主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畢證을 交付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汚物清掃法 第18條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竣工檢査
- 2. 電氣通信 工事業法 第2條에 의한 工事 中 構內通信線路設備工事의 竣工檢査

第7條의 2중 “제2 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를 削除한다.

第7條의 3 第2項을 削除한다.

第8條 中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를 “第5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築物을 建築 또는 大修繕하고자 할 때”로 한다.

第9條의 2 第2項 中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서울 特別市·直轄市·道 또는 地域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建設部長官이 指定하는 市·郡의 條例(이하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라 한다)”로 한다.

第10條 第2項 中 “第5條第1項 本文”을 “第5條 第1項”

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耐力의 基準 및 構造計算의 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 第2項 但書 중 “大統領令”을 “建設部令”으로 한다.
第12條를 삭제한다.

第17條의 題目 “(特殊建築物의 耐火構造)”를 “(建築物의 耐火構造)”로 하고, 同條本文중 “特殊建築物”을 “建築物”로 한다.

第18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居室의 窓 기타의 開口部로서 採光을 위한 部分의 面積은 그 居室의 바닥面積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照明裝置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9條를 削除한다.

第20條 第2項중 “汚物淨化槽”를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로 한다.

第23條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3條의 2 (建築物의 內裝) 5層이상인 建築物, 醫療施設·宿泊施設·觀覽集會施設·慰樂施設·共同住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屋內部分의 內裝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防火上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第23條의 3 第1項중 “대통령령”을 “建設部令”으로 하고, 同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溫突의 安全한 施工을 위하여 溫突施工者의 資格과 施工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第24條중 “建築物의 安全 또는 防火를 위하여 필요한”을 “建築物의 安全·衛生 또는 防火를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同條 중 “및 構造計算의 方法”을 削除하며, “建築設備의 設置 및 構造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建築設備의 設置 및 建築物의 用途別 構造·瑕疵補修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으로 한다.

第31條의 2를 削除한다.

第33條중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이 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插入한다.

第39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3項을 削除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長 또는 郡守는 都市의 過密化 防止를 위하여 第1項의 規定보다 建蔽率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建蔽率의 最大限度을 따로 정할 수 있다.

第40條 第1項 本文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 建築物의 延面積(垜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垜地面積에 대한 比率(이하 “容積率”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地域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地域의 容積率은 大統

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 市長 또는 郡守는 建築主가 建築物를 建築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建築物에 隣接하여 道路·公園·廣場·公共空地 등 公共施設을 設置하는 때에는 당해 建築物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容積率에 관한 規定을 완화하여 許可할 수 있다.
第41條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住居專用地域·住居地域 및 商業地域 안에서 建築하는 建築物과 共同住宅 또는 寄宿舍의 높이는 그 建築物로부터 隣接垜地境界線까지의 거리 및 同一垜地내의 다른 建築物(單獨住宅·共同住宅·寄宿舍에 한한다)까지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第42條 第3項에 但書を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住宅에 한하여 市長 또는 郡守가 期間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營業 기타 行爲를 許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44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建設部長官은 主務部長官이 國防 또는 經濟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要請한 경우와 地域計劃 또는 都市計劃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 또는 郡守의 建築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第45條 第1項 本文 중 “부산시장”을 “直轄市長”으로, “시장·군수”를 “市長 또는 郡守”로 하며, 同條 第1項 第1號중 “제12條 第1項”을 削除하고, 同項 第3號를 削除한다.

第45條 第2項중 “第31條의 2”를 削除한다.

第46條의 題目 “(災害地區에서의 建築制限)”을 “(災害區域에서의 建築制限)”으로 한다.

第49條 중 “高架水槽” 다음에 “地下待避壕”를 插入한다.

第52條 本文중 “構造 또는 建築設備”를 “構造·建築設備 또는 用途”로 하고, “트하는”을 “걸치는”으로 하며, 同條 但書を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建築物의 全部 또는 一部가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에 걸치는 경우, 그 建築物 및 垜地의 全部에 대하여는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 안의 建築物 및 垜地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第53條의 2 第2項중 “오물정화조”를 각각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로 한다.

第53條의 4의 題目 “(同前)”을 “(다른 法令의 排除)”로 하며, 同條 중 “液狀廢棄物淨化槽”를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로, “汚物清掃法 第14條”를 “汚物清掃法 第19條”로 한다.

第53條의 7 第2項중 “都市計劃施設의 設置로 인하여”를 “都市計劃施設의 設置 또는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로 한다.

第55條 第1號중 “第7條 第3項”을 “第7條 第4項”으로 한다.

第56條 第1號중 “第5條 第1項 但書”를 “第5條 第2項”으로 하고, 同條 第2號중 “또는 第7條의 3 第2項”을

削除한다.

第56條의 2 第2號중 “第7條第4項”을 “第7條第5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第6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申告를 한 者

第7章의 題目 “雜則”을 “補則”으로 한다.

第2條 第15號 第1項, 第5條第2項 및 第4項, 第6條第3項 및 第4項, 第7條第1項·第2項 및 第3項, 第7條의 2, 第7條의 3 第2項, 第8條, 第9條의 2 第3項, 第12條第2項, 第26條第1項 및 第2項, 第29條, 第30條第2項 및 第3項, 第31條의 2, 第33條의 2 第2項 및 第3項, 第33條의 3 第1項·第3項 및 第4項·第42條第1項·第2項 및 第5項, 第42條의 2 第1項, 第44條第1項, 第44條의 2 第1項, 第46條第1項 및 第2項, 第47條第1項 및 第2項중 “市長·郡守”를 각각 “市長 또는 郡守”로 한다.

第55條, 第56條 및 第56條의 2의 題目 “(同前)”을 “(罰

則)”으로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법은 198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第6項第4號·第7條第6項第1號·第20條第2項·第53條의 2 第2項 및 第53條의 4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3,554號 汚物清掃法改正法律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② (既存建築物에 관한 經過措置) 許可廳은 이 법 施行日 현재의 既存建築物에 熱併合發電設備 또는 環境保全法에 의한 環境汚染防止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建蔽率 및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容積率을 緩和하여 그 設置를 許可할 수 있다.

③ (適用制限) 第53條의 7 第2項중 土地區劃整理 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第3章 내지 第5章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垆地등에 대한 許可緩和規定은 이 법 施行日 전에 그 事業이 完了된 分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建築士法中改正法律(개정 4. 3일)

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 한다.

第2條 第2號중 “機械·” 다음에 “에너지·”를, 同條第3號중 “建築士가” 다음에 “자기 責任下에 建築法 第2條第21號의 規定에 의한”을 插入하고, 同條第4號 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가 자기 責任下에”로 한다.

第4條 (設計 또는 工事監理등) ① 建築法の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할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는 경우의 設計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建築法 第6條 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를 정하여야 하는 建築物의 建築이나 大修繕의 경우의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作成하거나 인정하는 標準設計圖書 또는 特殊工法을 適用한 設計圖書에 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條 中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한다.

第11條의 題目 “(免許의 取消)”를 “(免許의 取消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取消할 수 있다”를 “取消하여야 한다”로 하며, 但書를 削除하고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第5號를 削除하고, 同條第3項중 “免許證”을 “免許證 및 免許手帖”으로 한다.

2. 第9條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게 된 때.

第14條중 “7年”을 “5年”으로, “9年”을 “7年”으로 “12年”을 “10年”으로, “16年”을 “14年”으로 하고, 同條第5號를 削除한다.

第16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建築職公務員으로 7年 이상 근무하고 있는 者로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應試資格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銓衡試驗으로 建

築士의 免許를 할 수 있다.

第23條 第2項중 “機械·” 다음에 “에너지·”를 插入한다.

第23條의 2 第3項중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 및 綜合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를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로 한다.

第24條 中 “拒否할 수 있다”를 “拒否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條但書를 削除하며, 同條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2이상의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하는 者.

第25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技術用役育成法の 規定에 의한 用役業體에 소속된 建築士로서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에게 申告를 한 者가 特殊工場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第26條 中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者(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를 “建築士事務所開設者”로 한다.

第28條 第1項第5號중 “第23條第2項”을 “第23條第4項”으로 하며, 同項第7號 및 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한 때 또는 檢査를 拒否· 방해 또는 忌避한 때.

10. 이 법 또는 建築法에 의한 命令 또는 處分에 違反하거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이 법 또는 建築法の 規定에 違反한 때.

第30條의 題目 “(報告 및 檢査)”를 “(보고·檢査등)”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建築士事務所開設者는 그가 작성한 設計圖書 등을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備置·保管하여야 한

다.

第5章에 第30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0條의 2 (建築士補修教育) ① 建設部長官은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建築士에 대하여 技術 및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修教育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教育의 施行을 第31條의 建築士協會 기타 建築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31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建築士事務所開設者는 建築士의 品位保全·業務改善 및 建築技術의 研究·開發을 통한 建築物의 質的向上과 建築文化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建築士協會를 設立하여야 한다.

第32條 第2項 중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各道에”를 削除한다.

第33條 第2項 및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建築士로서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의 登録을 하지 아니한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協會의 準會員이 될 수 있다.

③ 會員 및 準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協會에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④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의 免許가 取消 또는 消滅되거나 建築士事務所의 登録이 取消 또는 抹消된 者는 建築士協會의 會員 또는 準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第34條 第1項 중 “理事 5人과”를 “理事 5人이상 9人 이하와”로 한다.

第40條의 題目 “(同前)”을 “(罰則)”으로, 第41條의 題目 “(同前)”을 “(過怠料)”로 한다.

第43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3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建設部長官이 第23條의 2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調査 및 檢査業務등에 종사하는 建築士事務所開設者는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附 則

이 法은 198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개정 4월 3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사업) 영 제2조제1호 카목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수렵장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사업
2. 스키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사업
3. 승마장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사업
4.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의 설치사업

제3조 (기초조사)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위탁·관광·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3. 건축시설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에 관한 사항
5.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소유형태에 관한 사항
7. 주변생태계의 현황에 관한 사항

제4조 (지구지정신청서)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시행중인 사업등의 현황조사보고 등)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중인 사업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보고는 개발촉진지구 또는 개발규제지구의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지구지정전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고시·결정사항의 현황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 지구지정전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현황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하나의 개발사업계획구역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구역의 변경을 말한다.

제7조(지구지정대상)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개발규제지구안에서 시행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초본) 1부.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그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2. 허가·인가·면허증등의 사본 각 1부
3. 개발사업계획서 또는 공사설계서 1부
4. 잔여공사(사업) 추진계획서 1부

제9조(토지형질변경등의 범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
2. 임목의 벌채 및 재식
3.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부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4.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
5.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다음의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종	별	기	준
석	탄	연간 3만톤 이상의 생산규모로 7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금 연간 50킬로그램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중 석 연간 30톤(Wo70%)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동 연간 1천톤(Cu 6%)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철·연·아 연간 2만톤(Fe56%, Pb·Zn각각 50%)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연
- 활석·옥석 연간 6만톤 이상의 생산규모이거나 연간 생산액 1억원 이상으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수정
- 은 연간 1천킬로그램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납 석 연간 6천톤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6.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위한 토지 형질의 변경
7.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묘지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의 변경
8. 제10조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따른 대지조성 및 시설을 위한 토지형질의 변경
9. 경작중인 전답의 환토·객토용 토석의 채취 및 전답의 개답·개간(경사도 5도 이하로서 무임목지에 한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에 따른 골재의 채취
10.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증축(개발규제지구안 또는 개발규제 지구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그 인접지에 시설확장의 여지가 없어 개발규제지구안에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나 개발규제지구안에 이미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 한한다)과 국민학교분교장의 설치(법·고속도로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학구 개편으로 통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11. 제10조 제3호 자목의 시설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의 변경

제10조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등) 영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농림업 또는 수산업용 건축물과 공작물
 - 가. 축사 : 1가구(개발규제지구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기존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나. 초지조성을 필요로 하는 우마등 사육용 축사 : 초지조성면적과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합제한 면적의 1천분의 5 이하인 것.
 - 다. 퇴비사 : 1가구당 기존 퇴비사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라. 잠실 : 상전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마. 싸이로 : 우마등의 사육(낙농을 위한 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최소한도 인 것.
 - 바. 창고·개발규제지구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저온저장을 포함한다)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그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기존창고의 면적을 포함한다)인 것.
 - 사. 관리용 건축물 : 파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에 단지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공여 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5이하로서 66제곱미터이하(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다)인 것.
 - 아. 농수산물 건조실 : 농산물(염연초를 포함한다)의 재배면적 또는 수산물의 양식면적의 1천분의 5이하(기존 농수산물 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한다)인 것.
 - 자.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 버섯재배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차. 양어장 관리용 건축물 :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주택 및 부속건축물
 - 가. 주택의 증축 : 기존 주택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지하층에 대하여는 나무의 부속건축물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 :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에 한하되, 기존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공시설 및 공용시설 등
 - 가.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관리용 건축물.
 -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 다. 보건소, 경찰관파출소, 초소, 읍·면·동사무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라. 제9조제10호의 학교시설과 동부대시설로서 증축된 시설 및 국민학교 분교장
 - 마. 이축 및 증축되는 교정시설
 - 바. 공익사업·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어 개발규제지구안의 인근대지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포함한다) 시설중 등산로·공중변소 및 66제곱미터 이하의 간이휴게소
 - 아. 공원묘지(기존 공설묘지를 포함한다)안의 그 운영에 필요한 대기실·휴게소·사무소·장제소·납골당 및 조상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화장장 및 그 부대시설
 -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탐 또는 기념비(전적비·총화탑 등)
 -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증축장 및 그 부대시설
 4. 부락공동시설
 - 가. 새마을회관

- 나. 공동작업장·공동창고·공동목욕탕·집하장 및 어린이놀이터 등 부락 공동시설
- 다.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 라.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유류판매소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선착장 및 물양장
- 마. 상여보관소
- 바. 양수시설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17제곱미터 이하의 간이급수용양수장
- 사. 해태·미역등의 중요생산을 위한 100제곱 미터 이하의 중요배양장(기존 중요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한다)
- 아. 정자등 간이휴게소

5. 광공업용 건축물등

- 가. 개발규제지구지정 이전부터의 공장으로서 그 지정이후에 증축되는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과 그 부대시설. 이 경우 증축되는 공장과 그 부대시설의 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형질의 변경은 증축할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개발규제지구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50인 이상인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새로이 건축되는 부대시설. 이 경우 새로운 대지 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공장부지안에서의 건축이어야 한다.
- 다. 개발규제지구안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광물을 원료로 하는 농외소득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공장
- 라. 제 9조제 5호의 행위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 마. 화약류 및 유류의 저장시설과 그 관리용 건축물

6.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

- 가.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매수선되는 기존 건축물
- 나. 제 9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의 설치와 제 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및 유류의 저장을 위한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부력·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등을 생산하는 임시시설물
- 다. 용도변경되는 다음의 건축물 및 공작물
 - (1) 건축물(개발규제지구의 지정당시에는 그 건축에 건축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특정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건축물
 - (2) 다른 종류의 공장으로서 업종이 변경되는 공장, 이 경우 변경후의 업종은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 기타 공해의 정도가 변경

전의 업종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 및 공작물을 근린생활시설(일용품소매점·간이음식점·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건관·목공소·의원·조산소·동물병원·간이수리점·취사용가스판매점·방앗간 및 장의사에 한한다)·사회복지시설(탁아소·양로원등을 말한다)·유치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 및 공작물

- 라. 개발규제지구지정 당시 이미 그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동 지구안에 두고 있는 버스운수업체가 기존정류장에 설치하는 안내양 후생복지시설·자가주유소 및 간이정비시설

- 마. 사회복지시설(고아원·양로원등을 말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 바. 개발규제지구지정 당시의 종교시설로서 증축되는 건축물. 이 경우 증축을 위한 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개발 규제지구지정 당시 기존 종교 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사. 농업용 자재의 생산·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 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시설

제11조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등)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규제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및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대한 비율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은 9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100분의 60이내,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100분의 300이내
3.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은 100분의 200 이내. 다만,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개발규제지구안의 간이공작물의 설치) 영제 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것을 말한다.

1. 간이잠실
2. 비닐하우스
3. 간이농수산물건조장
4. 간이퇴비장
5. 탈곡장
6. 온 실
7. 망 실

제13조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 19조 제 2항의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범위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기본도) 1부
2. 인감증명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사업계획서(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부
5. 영 제19조제 1항 각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하는서류 각 1부

③ 건설부장관이 영 제1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 7호서식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토지의 매수·수용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료 산정기준) 영 제2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수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의 업무에 대한 위탁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21조의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부
2. 별지 제 9호서식에 의한 토지세목조서 2부
3.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 건물세목조서 2부
4. 지적도 2부
5. 계획평면도 2부
6. 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2부
7. 조경 및 원상복구계획서 2부

③ 도시사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사업실시 계획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수송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사착수보고서) ① 영 제22조제 2항의 공사착수보고서는 별지 제 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 1부
2. 월별예정공정표 1부
3. 현장대리업체증명서 1부
4.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5. 노무동원인원 및 노임지급월별계획서 1부
6. 착공전 사진 1매

제17조 (선매자지정신청서) ① 영 제25조제 1항의 선매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신청서(사본) 1부
2. 개발사업시행범위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기본도) 각 1부
3. 사업계획서(목적 및 개요, 시행기간, 자금조달 계획, 시행방법등을 포함한다) 1부

제18조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① 영 제29조 제 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개발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공고일(이하 "부과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그 토지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19조 (수익자부담금의 면제기준)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3분의 2 이상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였거나 수용당한 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토지등의 5분의 1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금액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기부한 자
3. 개발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안에 1만제곱미터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개발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안에 하나의 주택과 그 건물바닥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5. 개발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안에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위토와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6.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분양받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등의 매도·수용에 따른 대토 등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소유자
7.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자

제20조 (수익자부담금의 면제신청등)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수익자부담금부과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부과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면제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부담금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과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 14호서식에 의한 수익자부담금면제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등기부 및 토지대장의 등본(가옥의 경우에는 가옥대장등본) 각 1부
3. 기부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월 이내에 면제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과기간) 수익자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2조 (납부통지) 사업시행자·시장 또는 군수는 수익자부담금·이용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및 손피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기한 2월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분할납부)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의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준공인가신청서 준공필증 등) ① 영 제33 조의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착공전사진과 준공후 사진을 첨부할 것) 2부
2. 실측평 면도 구적평 면도 및 조서(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다) 각 2부
3. 신·구지적대조도 2부
4. 소유자별 면적조서 2부

③ 법 제29조제2항의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부
2. 사업현황도 2부
3. 토지 및 시설의 배치도 2부
4. 토지 및 시설의 사용현황도 2부

제25조 (보존자원)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26조 (보존자원신고서등) ① 영 제41조제2항에 의한 보존자원의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존자원신고서

에 의한다.

② 도지사가 보존자원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존자원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존자원반출신청서등) 영 제41조제4항의 보존자원반출(재반입)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반출(재반입)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관광토산품생산업등록신청서등) ①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토산품생산업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 2부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부

③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토산품 생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관광토산품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 관광토산품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관광토산품생산업등록사항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한다) 2부
2. 인감증명 2부
3.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토지의 매수·수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업무의 위탁료산정기준표[제14조 관련]

매수·수용금액별	위탁료 산정 기준	비	고
10억원 이하	매수·수용액의 3.5% 이내	1. “매수·수용액”이라 함은 용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와 이주위자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수·수용액의 3.2% 이내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등 법정수수료는 위탁요율의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매수·수용액의 2.8% 이내	3. 개발사업 완공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 변경,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변경의 절차를 위한 관리비는 이 기준 요율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50억원 초과	매수·수용액의 2.5% 이내	4. 지역적인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위탁요율을 상호협의하여 증감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종 류	명 칭	지정보존자원 자 생 지 또는 소 재 지	보 존 구 역
광 물	석 회 석	제주도 일원	제주도 일원
동 물	제 주 마	“	“

비고 : 광물의 경우는 광업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서식생략>

● 건설부공고제25호(82. 3. 19일)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 제3호의 규정(문화재주변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의한 대상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한다.

○서울특별시

종별	지정 번호	명칭	수량·면적 보유·종별	소유자 보유자	소재지	지정일자
사적	275	延世大學校 스립스관	1동3,490평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81. 9. 25.

"	276	延世大學校 언더우드관	1 동819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55	"
"	277	延世大學校 아펜젤라관	1 동502평	"	"	"
"	278	舊서울大學校本館	1 동493평,	한국문화 예술전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 130	"
"	279	舊工業專習所本館	1 동302평	국 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199- 1	"
"	280	韓國銀行本館	1 동2, 633평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110	"
"	281	中央高等學校本館	1 동729평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	"
"	282	中央高等學校西館	1 동180평	"	"	"
"	283	中央高等學校東館	1 동196평	"	"	"
"	284	서울驛舍	1 동2, 006평	국 유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 가 122	"
"	285	高麗大學校本館	1 동975평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 가 1 - 2	"
"	286	高麗大學校舊圖書館	1 동1, 237평	"	"	"
○부산직할시						
사적	273	東來福泉洞 古墳群	5,894평 (107 필지)보호구역7,204평 (182 필지)	사 유	부산직할시 동래구 복천동	81. 6. 9
○대구직할시						
사적	290	大邱 桂山洞聖堂	1 동301평	재단법인대구 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대구직할시 중구 계산동 2 가 71	81. 9. 25
○인천직할시						
사적	287	仁川 番洞聖堂	1 동307평	재단법인인천 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인천직할시 중구 답동 3 - 1	81. 9. 25
○경기도						
사적	292	德浦鎮	14,760평 (14 필지)	김포군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81. 9. 25
○충청북도						
국보	205	中原 高句麗碑	1 기	국 유	충북 충원군 가급면 웅전리	81. 3. 18
○전라북도						
사적	272	萬人 義塚	12,038평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81. 4. 1
"	288	全州 殿洞 聖堂	1 동205평	재단법인전주 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전동1가200- 1	81. 9. 25
"	293	全瑋準先生故宅地	65평 (1필지)	정읍군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 장내리458-1	81. 11. 28
"	294	南故山城	지정 14,500평 (1 필지) 보호구역 35,021평 (18 필지)	국유 및 사유	전라북도 전주시 동서학동 산228	81. 12. 11
사적	295	黃土峴戰蹟地	33,428평 (33 필지)	사 유	전라북도 정읍군덕천읍 하학리	81. 12. 10
○전라남도						
사적	289	木浦市立圖書館	1 동181평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81. 9. 25
○경상북도						
보물	730	佛影寺 應眞殿	1 동	불영사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81. 7. 15
○경상남도						
사적	291	鎭海 郵遞局	1 동137평	국 유	경상남도 진해시 충신동	81. 9. 25